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김정희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2021년 몸을 돌볼 수 없는 친부의 돌봄을 포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청년 간병인 사건’¹⁾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돌봄기간은 46.1개월,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22.2%)는 일반청년(10.0%)의 2배, 우울감 유병율(61.5%, 일반청년 8.5%)은 7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2023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은 전국에 18만 3,234명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7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 설계를 위한 학업·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생계·의료 지원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대구 수성구에서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간병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계기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 서울시의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고, 경상남도 김해시가 기초자치체로서는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